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연구개발특구 내 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연구개발특구 내 도시공원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를 허용하고, 수변공원 및 대규모 체육공원 내 설치된 국제경기장에 설치가능한 공원시설을 추가하여 도시공원의 조성과 이용을 활성화하는 한편, 장기미집행 공원 일몰제로 인하여 공원 시설률이 초과된 경우 기존 시설률을 인정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8호 중 “제외한다”를 “제외한다)·유희시설(유원시설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전단 중 “·편익시설 및”을 “·편익시설,”로, “한정한다”를 “한정한다) 및 별표1 제9호에 따른 그 밖의 시설(바목으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11조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편익시설:”을 “편익시설 및 별표1 제9호에 따른 그 밖의 시설:”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국제경기장 관련 공익목적 시설(체육공원의 기능발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원관리청이 관할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제경기장 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1조제5항 중 “운동시설”을 “운동시설(이하 “특정 공원시설”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특정 공원시설이 이미 설치된 경우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도시공원 일부가 실효되어 특정 공원시설의 부지면적이 해당 공원시설 부지면적의 20퍼센트를 초과한 경우에는 전단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제5항 단서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공원관리청은 특정 공원시설의 추가설치 또는 건축행위가 수반되는 공원시설의 변경을 할 수 없다.

별표 1에 제5호(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에 제9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내 도시공원에 설치하는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국제경기장 관련 공익목적 시설

별표 4 비고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공원시설이 이미 설치된 경우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도시공원의 일부가 실효되어 공원시설부지면적이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공원관리청은 공원시설의 추가설치 또는 건축행위가 수반되는 공원시설의 변경을 할 수 없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시행 후 OO 부터 적용한다.

제3조(OO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A의 사무는 B가 승계한다.

제4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OOOO년 OO월 OO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5조(다른 법령의 폐지) OO 법령은 이를 폐지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공원시설의 설치·관리기준) ①법 제19조제7항에 따라 공원시설은 도시공원의 기능을 다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에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제9조(공원시설의 설치·관리기준) ①----- ----- ----- ----- ----.
1. ~ 7.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8. 수변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수변공간과 조화 를 이룰 수 있는 시설로서 조 경시설·휴양시설(경로당 및 노인복지관은 제외한다)·운 동시설·교양시설(온실, 전시 장, 생태학습원으로 한정한다) ·편익시설(일반음식점은 <u>제외한다</u>) 및 도시농업시설로 하며 수변공간의 오염을 초래 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설치 할 것	8. ----- ----- ----- ----- ----- ----- ----- ----- <u>제외</u> <u>한다</u>)·유희시설(유원시설은 <u>제외한다</u> ----- ----- ----
9. (생략)	9. (현행과 같음)
10. 체육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조경시설·휴양시 설(경로당 및 노인복지관은 제외한다)·유희시설·운동시	10. ----- ----- ----- -----

설·교양시설(고분·성터·고
옥 그 밖의 유적 등을 복원한
것으로서 역사적·학술적 가
치가 높은 시설, 공연장, 전시
장, 과학관, 미술관, 박물관 및
문화예술회관으로 한정한다)

· 편익시설 및 동물놀이터(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설치할 허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로 하되, 원칙적으로 연령과 성별의 구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이 경우 운동시설에는 체력단련시설을 포함한 3종목 이상의 시설을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11. · 12. (생략)

② · ③ (생략)

제11조(공원시설의 설치면적 등)

① (생략)

②다음 각 호의 공원시설은 각 호에서 정한 도시공원에만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제5호, 제8호, 제11호 및 제12호의 공원시설은 특별시·광역시·특

· 편익시설,

한정한다) 및 별표1 제9호에
따른 그 밖의 시설(바목으로
한정한다)

11. · 12.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공원시설의 설치면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해당 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도시공원의 면적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 3. (생략)

4. 다음 각 목의 편익시설: 국제경기대회 개최를 목적으로 경기장이 설치된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체육공원

가.·나. (생략)

<신설>

5. ~ 12. (생략)

③·④ (생략)

-----.

1. ~ 3. (현행과 같음)

4. ----- 편익시설 및 별표1 제9호에 따른 그 밖의 시설: -----

가.·나. (현행과 같음)

다.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국제경기장 관련 공익목적 시설(체육공원의 기능발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원관리청이 관할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제경기장 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 12.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⑤근린공원에 설치하는 도서관
· 문화예술회관 · 청소년수련시설 · 노인복지관 및 운동시설의 부지를 모두 합한 면적은 제1항 제1호에 따라 실제로 조성되는 해당 공원시설 부지면적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단서>
신설> <후단 신설>

⑥ ~ ⑨ (생략)

⑤-----

----- 운동시설(이
하 “특정 공원시설”이라 한다)-

----- . 다만,
특정 공원시설이 이미 설치된
경우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
라 도시공원 일부가 실효되어
특정 공원시설의 부지면적이 해
당 공원시설 부지면적의 20퍼센
트를 초과한 경우에는 전단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공원관리청은 특정 공원시
설의 추가설치 또는 건축행위가
수반되는 공원시설의 변경을 할
수 없다.

⑥ ~ ⑨ (현행과 같음)

공원시설의 종류(제3조관련)

공원시설	종류
1. 조경시설	관상용식수대 · 잔디밭 · 산울타리 · 그늘시렁 · 못 및 폭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공원경관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시설
2. 휴양시설	가. 야유회장 및 야영장(바비큐시설 및 급수시설을 포함한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자연공간과 어울려 도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 나. 경로당, 노인복지관 다. 수목원(「수목원 ·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목원을 말한다.)
3. 유희시설	시소 · 정글짐 · 사다리 · 순환회전차 · 캐노 · 모험놀이장, 유원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를 말한다), 발물놀이터 · 뱃놀이터 및 낚시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도시민의 여가선용을 위한 놀이시설
4. 운동시설	가.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운동종목을 위한 운동시설. 다만, 무도학원 · 무도장 및 자동차경주장은 제외하고, 사격장은 실내사격장에 한하며, 골프장은 6홀 이하의 규모에 한한다. 나. 자연체험장
5. 교양시설	가. 도서관 및 독서실 나. 온실 다. 야외극장, 문화예술회관, 미술관 및 과학관 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가목에 따른 장애인복지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에 따른 사회복지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른 건강생활지원센터 마. 청소년수련시설(생활권 수련시설에 한한다) 및 학생기숙사(「대학설립 · 운영규정」 별표 2에 따른 지원시설 및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

6. 편익시설	표 5에 따른 지원시설로 한정한다)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 (1)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 내 도시공원에 설치하는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도시공원에 설치하는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4)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내 도시공원에 설치하는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사. 「유아교육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국립유치원 및 공립유치원 아. 천체 또는 기상관측시설 자. 기념비, 고분·성터·고옥, 그 밖의 유적 등을 복원한 것으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높은 시설 차. 공연장(「공연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을 말한다) 및 전시장 카.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재난·재해 안전체험장 및 생태학습원(유아숲체험원 및 산림교육센터를 포함한다) 타. 민속놀이마당 및 정원 파. 그 밖에 가목부터 카목까지와 유사한 시설로서 도시민의 교양함양을 위한 시설 가. 우체통·공중전화실·휴게음식점[「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이하 “음식판매자동차”라 한다)를 사용한 휴게음식점을 포함한다]·일반음식점·약국·수화물예치소·전망대·시계탑·음수장·제과점(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한 제과점을 포함한다) 및 사진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공원이용객에게 편리함을
----------------	--

	제공하는 시설 나. 유스호스텔 다. 선수 전용 숙소, 운동시설 관련 사무실, 「유통산업발전법」 별표에 따른 대형마트 및 쇼핑센터,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호에 따른 농산물 직매장
7. 공원관리시설	창고·차고·계시판·표지·조명시설·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쓰레기처리장·쓰레기통·수도, 우물, 태양에너지설비(건축물 및 주차장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공원관리에 필요한 시설
8. 도시농업시설	도시텃밭, 도시농업용 온실·온상·퇴비장, 관수 및 급수 시설, 세면장, 농기구 세척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도시농업을 위한 시설
9. 그 밖의 시설	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장사시설 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역사 관련 시설 다. 동물놀이터 라. 국가보훈관계 법령(「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법령을 말한다)에 따른 보훈단체가 입주하는 보훈회관 마. 무인동력비행장치(「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5호가목에 따른 무인동력비행장치로서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2킬로그램 이하인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를 말한다) 조종연습장 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국제경기장 관련 공익목적 시설

도시공원 안 공원시설 부지면적(제11조 관련)

공원구분	공원면적	공원시설 부지면적
1. 생활권 공원		
가. 소공원	전부 해당	100분의 20이하
나. 어린이공원	전부 해당	100분의 60이하
다. 근린공원	(1) 3만제곱미터 미만	100분의 40이하
	(2) 3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 곱미터 미만	100분의 40이하
	(3) 10만제곱미터 이상	100분의 40이하
2. 주제공원		
가. 역사공원	전부 해당	제한 없음
나. 문화공원	전부 해당	제한 없음
다. 수변공원	전부 해당	100분의 40이하
라. 묘지공원	전부 해당	100분의 20이상
마. 체육공원	(1) 3만제곱미터 미만	100분의 50이하
	(2) 3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	100분의 50이하
	(3) 10만제곱미터 이상	100분의 50이하
바. 도시농업공원	전부 해당	100분의 40 이하
사. 법 제15조제1항 제3호아목에 따른 공원	전부 해당	제한 없음

비고

1. 제1호다목의 근린공원의 부지면적을 산정할 때 수목원의 부지면적은 해당 수목원 안에 있는 건축물의 면적만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2. 제2호바목의 도시농업공원의 부지면적을 산정할 때 도시텃밭의 면적은 제외하여 산정한다.
3. **공원시설이 이미 설치된 경우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도시공원의 일부가 실효되어 공원시설부지 면적이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공원관리청은 공원시설의 추가설치 또는 건축행위가 수반되는 공원시설의 변경을 할 수 없다.**